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윤준병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4702

발의연월일: 2024. 10. 16.

발 의 자:윤준병ㆍ이병진ㆍ임미애

이기헌 • 박희승 • 강준현

민병덕 • 박홍배 • 정동영

민형배 · 신영대 · 박민규

서영교 의원(13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서 청원산림보호직원은 배치된 지역을 관할하는 배치권자 또는 청원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의 감독을 받아 그 보 호지역에서 임업서기의 직무를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음.

그런데, 1963년 현행법 제정 이후 현재까지 재직기간의 장단(長短) 과 무관하게 임업서기라는 단일직급의 보수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어 근무의욕 저하 및 타성적인 업무수행 등을 유발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상태임.

이에 청원산림보호직원의 보수를 재직기간별로 구분하여 보수체계를 현실화함으로써 근무여건을 개선하고, 산림의 피해 방지와 보호·육성 등을 담당하는 청원산림보호직원들이 사명감을 갖고 충실히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처우개선하려는 것임(안 제4조제2항 신설 등).

법률 제 호

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4조의 제목 중 "직무"를 "직무 및 보수"로 하고, 같은 조 제목 외의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, 같은 조 제1항(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) 중 "임업서기"를 "임업직렬 공무원"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②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산림보호직원의 보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같은 재직기간에 해당하는 임업직렬 공 무원의 보수를 지급한다.
- 1. 재직기간 7년 미만: 임업서기보
- 2. 재직기간 7년 이상 14년 미만: 임업서기
- 3. 재직기간 14년 이상 24년 미만: 임업주사보
- 4. 재직기간 24년 이상: 임업주사

제5조제3항 중 "자격, 보수"를 "자격"으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혅 행 개 정 아 제4조(산림보호직원의 직무) 산림 제4조(산림보호직원의 직무 및 보호직원은 그 배치된 지역을 보수) ① -----관할하는 배치권자 또는 청원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 관의 장의 감독을 받아 그 보 호지역에서 임업서기의 직무를 ----임업직렬 공무원----수행하다. ②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 <신 설> 체에 근무하는 산림보호직원의 보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같은 재직기간에 해당하 는 임업직렬 공무원의 보수를 지급한다. 1. 재직기간 7년 미만: 임업서 기보 2. 재직기간 7년 이상 14년 미 만: 임업서기 3. 재직기간 14년 이상 24년 미 만: 임업주사보 4. 재직기간 24년 이상: 임업주 사 제5조(산림보호직원의 임용 등) 제5조(산림보호직원의 임용 등) ①·② (생 략) ①·② (현행과 같음)

- 6 -					
③ 산림보호직원의 임용 <u>자격,</u>	③ <u>자격</u>				
<u>보수</u> , 교육, 복무, 복제 및 그					
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					
으로 정한다.	<u>.</u>				